

『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본 조례는 2005년 구미시경로회관 부지(구미시 산책길 51)에 “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”이 개관되면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경로회관설치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“구미시경로회관”이 “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”으로 변경되어 조례 규정 대상인 구미시경로회관이 부존재 하며, 현재 「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2005. 11. 4 제정되어 운영되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